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89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김기현 · 김정재 · 김미애
박성민 · 조지연 · 서지영
김선교 · 추경호 · 성일종
한지아 · 김대식 · 조정훈
박성훈 · 서일준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공격이 잇따라 발생하여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등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 근거는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있어 사이버보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진단·점검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시정조치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56조 제5항 및 제6항 등).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
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
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
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시행”을 “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5항의 자체 진단·점검에서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
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6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등을 지체 없이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 <u>시행</u>) ① ~ ④ (생략) <u><신설></u>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 <u>시행 등</u>)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u><신설></u>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5항의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u>자체 진단·점검에서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78조(과태료)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아니한 자</u> 4. <u>제56조제6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등을 지체 없이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